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43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,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(안 제4조제1항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육연수계획의 수립 · 시행)	**제4조(교육연수계획의 수립 · 시행)**
① 의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	① ---- 의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6.3.5. 일부개정, 2026.7.1. 시행)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(조례)」(2025.7.18. 제정, 2025.7.18. 시행)

제25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